

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2월 18일

강일원, 박동학 의원 등 12명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2월 1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10. 3. 15)
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 설명자 :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)

□ 제안 이유

부천시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운 전문용어, 복잡한 절차 등 뉴타운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과 지역 주민에게 법률상담 및 제반정보, 이해 당사자간의 화해 조정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□ 주요 골자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. 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지원센터의 기능을 정함. (안 제3조)

다. 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관의 책무. (안 제4조)

라. 지원센터의 시설 및 조직, 임명사항을 정함 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
마. 지원센터 근무자의 비밀 유지 의무. (안 제8조)

- 바. 지원센터 근무자의 해임, 보수지급, 이용대상 및 운영, 민원 신청방법을 정함. 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)
- 사. 지원센터 민원조사, 시장 및 민원 통보사항을 정함. (안 제12조, 제14조, 제15조)
- 아. 민원의 조치결과 등 요구, 민원사례 공표사항을 정함. (안 제16조, 제17조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○ 센터 근무자를 상근인력으로 운영할 경우 공무원 정원조정과 총액인건비제 관련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?	○ 공무원 정원 조정과 총액인건비관련 문제가 있다면 부천시 보조금지원 조례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.
○ 부천시 보조금지원 조례를 운영할 시 대표센터장의 법률적 지위 및 구조가 상충되고 대표센터장의 임명 자격 조건과 근무자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	○ 위원회에서 요구하는데로 수정토록하겠음.
○ 뉴타운사업 관련하여 많은 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 하도록 바람.	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547호
의결 년월일	2010. 3. 19 (제159회)

제안년월일 : 2010. 3. 15.

제안자 : 건설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7조에서 규정한 시민지원센터 대표센터장의 임명 자격 기준이 뉴타운사업의 법률적 근거인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이 제정·공포되어 운영된 기간과 불부합.

2. 주요골자

-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근무년수 수정

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1항 제1호의
 “뉴타운사업 관련 직종에 10년 이상 근무한자”를
 “뉴타운사업 관련 직종에 5년 이상 근무한 자”로 수정
-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1항 제2호의
 “세무분야에 20년 이상 근무한자”를
 “세무·법무분야 등에 20년 이상 근무한 자”로 수정
-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1항 제3호의
 “뉴타운사업 관련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”를
 “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”로 수정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임명) ① (생략) 1. 뉴타운사업 관련 직종에 <u>10년 이상</u> 근무한자 2. <u>세무분야에 20년 이상</u> 근무한자 3. <u>뉴타운사업 관련 국가 또는 지방공</u> <u>무원으로 30년 이상</u>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② (생략)	제7조(임명) ① (제정안과 같음) 1. ----- <u>5년 이상</u> ----- 2. <u>세무·법무분야 등에</u> ----- 3. <u>국가 또는 지방공</u> <u>무원으로 20년</u> ----- ----- ② (제정안과 같음)

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·운영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제반정보, 이해 당사자간의 화해 조정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뉴타운사업”이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및 「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을 말한다.
2. “뉴타운사업 시민 지원센터”(이하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란 뉴타운사업 지역 주민 및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률 상담 및 각종 제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기능)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주민 대상 뉴타운사업 각종법률상담
2. 해당 지구 및 구역단위별 추진상황 정보제공
3. 해당 지구 및 구역단위별 주민 및 이해 당사자간 민원처리 및 화해 조정기능
4. 그 밖에 다양한 뉴타운사업 지원서비스 제공 등

제4조(기관의 책무) ① 시장, 조합, 추진위원회 (이하“시장 등”이라 한다)는 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시장 등은 지원센터의 직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.

③ 지원센터는 그 지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시설)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

데 필요한 상담실,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6조(조직) ① 지원센터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, 그 중 1인을 대표 센터의 장으로 한다.

② 지원센터 근무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.

제7조(임명) ① 시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, 임명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1. 뉴타운사업 관련 직종에 5년 이상 근무한 자
2. 세무·법무분야 등에 20년 이상 근무한 자
3.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② 시장은 대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센터 근무자를 위촉하며, 위촉장을 교부하여야한다.

제8조(비밀유지 의무) 지원센터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.

제9조(해임) 시장은 지원센터 근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

1.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
2. 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야기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때
3.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4. 그 밖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제10조(보수의 지급) 보수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에 따라 센터장은

일반직공무원 5급 15호봉으로 그 외의 자는 6급 10호봉으로 하며 경력환산을 및 제반수당 등의 지급방법은 그에 따른다.

제11조(지원센터이용의 대상 및 운영)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뉴타운사업 지구내 거주민 또는 이해 당사자로 하며, 지원센터 운영 시간 및 근무체제는 부천시공무원 근무형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12조(민원신청) ① 제3조의 지원센터기능과 관련하여 뉴타운사업 지역 주민 및 이해 당사자는 시장 등이 시행한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 서면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.

1.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 기타의 단체에서 있어서는 명칭,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)
2. 민원의 신청목적 및 사실내용 등

제13조(민원의 조사 등) ① 지원센터는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민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허위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
2. 판결,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가 있을 때
3. 도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신청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
4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사항

제14조(시장 등에 통보) ① 지원센터는 민원관련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

시장 등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한다.

② 민원조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 등 이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현황청취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는 자는 적극 협조 하여야한다.

제15조(민원의 통보) 지원센터는 민원조사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한다.

제16조(조치결과 등 요구) ① 지원센터는 민원조사결과를 시장 등에게 조치의 권고 및 조치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시장 등은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지원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가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한다.

제17조(민원사례공표) ① 지원센터는 제15조 민원조사 통보내용 및 제16조 제2항의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

② 민원사례 공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대하여 최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·운영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제반정보, 이해 당사자간의 화해 조정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뉴타운사업”이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및 「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

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을 말한다.

2. “뉴타운사업 시민 지원센터”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란 뉴타운사업 지역 주민 및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률 상담 및 각종 제반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기능)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주민 대상 뉴타운사업 각종법률상담
2. 해당 지구 및 구역단위별 추진상황 정보제공
3. 해당 지구 및 구역단위별 주민 및 이해 당사자간 민원처리 및 화해 조정기능

4. 그 밖에 다양한 뉴타운사업 지원서비스 제공 등

제4조(기관의 책무) ① 시장, 조합, 추진위원회 (이하 “시장 등”이라 한다)

는 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시장 등은 지원센터의 직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.

③ 지원센터는 그 지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시설)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

데 필요한 상담실,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6조(조직) ① 지원센터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하고, 그 중 1명을 대표 센터의 장으로 한다.

② 지원센터 근무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.

제7조(임명) ①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, 임명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1. 뉴타운사업 관련 직종에 5년 이상 근무한 자

2. 세무·법무분야 등에 20년 이상 근무한 자

3.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② 시장은 대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센터 근무자를 위촉하며,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밀유지 의무) 지원센터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

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.

제9조(해임) 시장은 지원센터 근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

1.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
2. 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야기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때
3.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4. 그 밖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제10조(보수의 지급) 보수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에 따라 센터장은 일반직공무원 5급 15호봉으로 그 외의 자는 6급 10호봉으로 하며 경력환산을 및 제반수당 등의 지급방법은 그에 따른다.

제11조(지원센터이용의 대상 및 운영)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뉴타운사업 지구내 거주민 또는 이해 당사자로 하며, 지원센터 운영 시간 및 근무체제는 부천시공무원 근무형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12조(민원신청) ① 제3조의 지원센터기능과 관련하여 뉴타운사업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는 시장 등이 시행한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 서면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.

1.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 기타의 단체에서 있어서는 명칭,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)

2. 민원의 신청목적 및 사실내용 등

제13조(민원의 조사 등) ① 지원센터는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민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허위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
2. 판결,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가 있을 때
3. 도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신청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
4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

제14조(시장 등에 통보) ① 지원센터는 민원관련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민원조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 등 이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현황청취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는 자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.

제15조(민원의 통보) 지원센터는 민원조사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(조치결과 등 요구) ① 지원센터는 민원조사결과를 시장 등에게 조치의 권고 및 조치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시장 등은 15일

이내에 조치결과를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지원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가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한다.

제17조(민원사례공표) ① 지원센터는 제15조 민원조사 통보내용 및 제16조 제2항의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

② 민원사례 공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대하여 최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